

제12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The 12th Session of the CODEX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I. 서 론

제12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가 199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Westin Plaza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는 참가국 15개국을 비롯하여 참관국 4개국 외에 10개의 비정부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즉석면에 대한 규정설정 필요성 검토」등 13개 의제를 토의하였다.

II. 종합평가 및 의견

1. 즉석면규격설정의 체계적 대응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즉석면에 대한 규격설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본 규격의 설정타당성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규격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자원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본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 특히, 제품명의 경우 일본이 "Ramen"이라는 용어사용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를 포함한 중국, 태국 등 회원

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었음.

- 그러나 향후 규격설정의 검토단계에서 일본이 "Ramen"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규격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국간의 상당한 논란이 예견되므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원국과의 사전협의 및 공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수석대표의 경우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고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향후 현지 대사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즉석면 관련 논의는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견해에 대해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제회의의 경험 부족에서 오

는 대응력 미비의 결과라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CODEX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즉석면의 세부 내용 검토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내용의 관련 자료 축적이 필요함.

- 특히, 이해 당사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분석자료 및 긴밀한 체제유지를 위한 사전유대강화가 절대 필요함.

2. 정보의 공유

○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김치에 대한 일본소비자단체의 의견 및 Dietary intake survey 관련 질문서는 접촉창구인 농림부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 정보가 관련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공유되지 않아 본 회의에서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접촉창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문서의 배포에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원활한 정보의 공유가 절대 필요함.

3. 관련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 세계 각국은 과학적 실험 data를 토대로 상대국의 식품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자국산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과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함.

4. 우리나라의 의견반영을 위해 CODEX 관련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단순히 조사·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식품행정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식품행정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바 실제 업무 담당자와 함께 행정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이 필요함.

Ⅲ. 의제별 논의사항

□ 개 회

○ 17개 아시아지역 회원국, 3개 참관국, 8개 비정부기구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가 태국의 차앙마이에서 개최됨.

의제1. 의제 채택(Adoption of the Agenda)

□ 논의내용

- 본 회의의 부의장 선출 등 총 14개의 의제 채택
- <의제 12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에 다음의 4가지 의제를 추가채택
 -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 Need for Improved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EX
 - Need for Consensus in Elabor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 〈의제 8 지역내에서의 위해평가이행〉에서의 논의사항
 - Priority Issue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isk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Hazards in Food
 - Food Database Dietary Exposure
 -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s

□ 기타 관련사항

- 김치(별첨참조)
 - 소비자단체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 IACFO)에서 김치를 추가의제로 논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소비자단체는 추가의제를 상정할 수 없다는 CODEX 사무국의 방침에 따라 추가의제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
 - 이에 따라 IACFO의 회원중 하나인 일본 소비자단체(Japan Offspring Fund, JOF)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에 의견 교환을 요청하여 별도의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JOF의 의견요약
 - 일본소비자단체는 전통식품은 전통식품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전통김치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아울러 지금의 규격이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가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므로 현재 6단계에 있는 김치의 규격안을 재검토하기를 희망함.
 - 특히 산도조절제등 식품첨가물규격을 다시 검토하여야 함.
 -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김치규격은 농림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의견을 우리나라의 담당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겠음을 언급하였고, 귀

국 즉시 공문으로 자료등을 농림부에 송부한 바 있음.

□ 평 가

- 본 회의는 아시아지역 국가만을 위한 회의로 아시아국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본 분과의 업무분장 이외의 것이라도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즉, 미생물의 위해평가, 일반 원칙의 Other legitimate factor 등 다른 분과에서 논의한 의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분위기임.

□ 향후 대응방안

- 우리나라관련 의제의 경우 해당분과가 아니더라도 추가의제로 채택이 가능하므로 여러분과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김치와 관련하여 일본소비자단체가 우리나라에 보낸 편지등 어떠한 자료도 우리나라대표단에 전달된 바 없어 대응하기가 어려웠음. 따라서 김치문제는 관련분과가 아니라도 CODEX 관련회의에서는 언제라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처간 공동대응을 통하여 정보의 상호공유가 필요함.

의제 2. 부의장 선출(Election of Vice-Chairperson)
- CX/ASIA 99/1 -

□ 논의내용

- Mr. Pattanaik(인도)을 회의진행을 위한 부의장으로 선출함.

의제 3. 23차 총회에서 제기한 문제 (Matters Arising from the 23rd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 23차 총회보고서(Report of the 23rd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논의내용

- 유제품 중 오염물질의 기준
 -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주석은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재평가를 위해 5단계에서 보류한데 비하여 남은 JECFA의 재평가가 필요함에도 버터 중의 납의 기준이 채택되어 규격적용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인도가 CCFAC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의견을 보내기로 함.
- 23차 총회에서 채택된 Asian Regional Guidelines for CODEX Contact Point and National CODEX Committee와 관련하여 CODEX 권고사항(CODEX recommendation)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며 CODEX Contact Point/National CODEX Committee를 설치할 경우 이 지침이 제공될 것임.
-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회의는 2000. 3. 14~1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며 관련문서는 향후 공람예정임. 또한 FAO, WHO는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기술적인 조언을 하였음.

(b) 즉석면에 대한 규격설정 필요성 검토(Feasibility of Elaborating a CODEX Standard for Instant Noodles)
- CX/ASIA 99/2 CX/ASIA 99/3 -

□ 논의내용

- 그간의 경위
 - 23차 총회(1999. 6)에서 즉석면에 대한 규격설정 필요성을 본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가 규격 초안을 작성·제공한 바 있음.

- 규격설정의 당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즉석면의 생산 및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소비량이 아시아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관련국간의 규격차이가 있음.
- 규격명의 경우 라멘(Ramen)과 같이 특정국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에 따라 Ramen을 삭제하고 "Instant Noodle"로 결정함.
- 또한 규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여러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는 원료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네팔은 밀가루로 만든 면에 조식개발을 위한 알칼리제처리를 한 것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 이에 대해 CODEX사무국은 제한된 범위보다는 일반적인 성질 위주로 규격이 설정되고 있음을 설명함.
- 한편, 본 규격에서 규정하는 제품과 이탈리아인 파스타와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즉석면은 이탈리아인 파스타와는 달리 Pregelatinization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정의에 포함하여 파스타등과 구별하기로 하고 밀가루외에 쌀가루 역시 원료로 사용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Instant noodle is a product prepared from wheat flour or rice flour as the main ingredient, with or without the addition of other ingredients. It may be treated by alkaline agents. It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pregelatinization process and dehydration either by frying or by other methods.
- 지역규격이 아닌 세계규격으로 하여 47차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함. 이때 담당 분과도 결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은 규격초안 작성시 작업반에 참여를 희망하였음.
- 기타 논의내용
 - 품질규정에 산가나 과산화물가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말레이시아).

□ 본회의 개최 전 일본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

- 1999. 11. 23(화) 본회의 개최 전 일본대표단과 즉석면에 대한 규격설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때 우리나라는 라멘(Ramen)이라는 용어는 너무 특정국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세계규격의 명칭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이에 대해 일본은 김치명칭의 예를 들면서 '라멘'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여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였음.

□ 평 가

- 본 작업을 승인할 47차 집행이사회는 2000. 6월에 개최예정임.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작업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상황
 - 우리나라등 다수의 의견에 따라 "Ramen"이라는 용어의 삭제나 수용한 후 별다른 의견은 개진하지 않았음.
 - 향후 다른방법으로 "Ramen"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경우 규격설정에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나 향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즉석면 홍보자료는 우리나라의 업체가 홍보되어 CODEX 기본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CODEX 사무국의 의견에 따라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배포함.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즉석면의 소비량은 많지 않지만 자국의 관심사항을 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며 자국의 의견을 관철시켰음.

□ 향후 대응방안

- 집행이사회의 작업승인을 받기 전까지 제외국의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규격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규격안에 대한 부분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언요지(별첨자료 참고)

- 즉석면은 생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각국간의 규격이 달라 교역시 문제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보호와 건전한 교역 촉진을 위해 규격설정 필요성이 있음.
- 규격설정을 위한 작업반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작업반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의제 4. 코코넛제품에 대한 규격초안 - 4단계(Proposed Draft Standard for Aqueous Coconut Products at Step 4) - CX/ASIA 99/4 -

□ 논의내용

- 10차 회의에서 신규작업으로 제안되었으며, 11차 회의에서 3단계로 반려된 바 있음.
- Scope
 - Coconut milk, Coconut cream 만을 포함하는 규격으로 Sweetened and/or flavored coconut beverages는 제외됨.
- Essential composition and quality factor
 - 선택성원료에 Sodium caseinate

를 포함함.

- Quality criteria에 있는 3.3 Composition항을 별첨(Annex)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제품 명칭 (Denomination)을 위해 본문(Body of the text)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Food additives
 - 태국의 제안에 따라 식품첨가물 규정을 삽입하고 의견수렴을 하기로 함.
- Labelling
 - Nutritive value 관련 표시조항을 삭제하기로 함.
 - Sulphur dioxide 사용관련 문구를 삭제(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Annex
 - Coconut milk의 등급(Grading)과 관련한 성분 및 표시를 별첨에 규정하기로 함.
- 회의결과
 - 5단계로 상정하고 향후 CODEX 가공과채류분과에서 담당하기로 함.

□ 평 가

- 선택성원료에 Sodium caseinate와 같은 식품첨가물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향후 대응방안

- 코코넛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나 향후 유통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우리나라관련 규격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의제 5. 코코넛제품에 대한 위생실행규범 설정(Elaboration of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Aqueous Coconut Products)
 - CL 1999/12-ASIA, CX/ASIA 99/5 -

□ 논의내용

- 위생규범은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및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Low Acid and Acidified Low Acid Canning Foods에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범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기로 함.

□ 평 가

- 기존에 관련 규범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제품의 규범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의제 6. 유성분을 비유성분으로 대치한 유제품에 대한 규격설정 (Elaboration of a Standard for Products in Which Milk Components are Substituted by Non-Milk Components)

□ 논의내용

- 23차 총회에서 CCMMP(CODEX Committee on Milk and Milk products) 관련 규격(낙농용어의 사용에 대한 일반규격)이 채택되었으나, 유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Vegetable oil로 대치한 제품(Filled milk 등)에 Milk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일부 동남아시아국가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아시아지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별도의 규격이 필요한지에 대해 CCMMP 및 CCASIA에서 먼저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본 제품이 오래 전부터 생산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요한 영양급원이고 소비자에

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성분의 시장확대를 위해 본 규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낙농용어의 사용에 대한 일반규격”은 Coconut milk, Peanut butter와 같이 전통제품에 Dairy term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함.
- 일본과 인도대표는 이러한 제품은 표시에 우유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잠재교역량을 고려할 때 47차 집행이사회에 다음의 3개 규격을 신설할 것을 상정하기로 하고 공람 문서는 말레이시아, 태국이 작성하기로 함.
 - Evaporated filled milk
 - Sweetened condensed filled milk
 - Filled milk powders
- 말레이시아는 이 제품이 CCMMP의 업무분장 외 일로서 집행이사회가 Task force의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Task force의 의장직을 희망함.

□ 평 가

- 본 제품은 유지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Vegetable oil/fat으로 대체한 것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본 제품에 대한 규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제품은 농림부 소관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규격은 없음. 또한 식품공전상에서도 유제품을 기본으로 한 제품에 대한 규격은 설정하지 않아 어느 규격에도 해당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이 제품이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들 제품의 수입, 유통에 대비하여 정확한 제품유형분류와 함께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의제 7. CODEX 규격수락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련 정보

(Information and Reports in Food Control and Food Safety Issues including Acceptance of CODEX Standards)

(a) 지역내의 FAO, WHO 활동보고서(Reports on FAO and WHO Activities in the Region)

□ 논의내용

- FAO 활동내용
 - WHO와 공동으로 CODEX 식품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회 및 회의 개최(Risk communication, Human vitamin and Mineral requirement, Risk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hazard in food 관련 전문가협의회 개최 등 포함)
 - UNEP와 공동으로 Mycotoxin 관련 회의 개최
 - JECFA 회의 개최
 - 51, 53차 회의 : 435개 Flavoring agents, 3개 오염물질을 포함한 500여개 식품첨가물을 평가하고 낙화생유, 대두유의 알러지 유발 가능성을 검토함.
 - 50, 52차 회의 : 29개 잔류수의 약품을 검토함.
 - JMPR(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회의 개최
 - 45개 잔류농약을 평가함.
 - 식품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5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Procedures for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food control purpose in collaboration with IAEA
 - An Expert consultation on

- *Listeria* in fish products
- An International food data conference
- An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rnational trade beyond 2000
- 국가지원 활동
 -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를 태국, 인도, 베트남에서 실행함.
- ILSI(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와 공동으로 워크샵 개최
- Fishery Division : 워크샵 및 HACCP 훈련 개최
- FAO 지역사무소 : 노상판매식품 관련 지역세미나 개최
- WHO 활동내용
 - 지역내에서의 WHO 활동분야가 3개로 분류되어 진행중임을 설명함.
 - 기본활동 : JECFA, JMPR, WHO Consultation(Web site (<http://www.who.int/fsf>)로 검색가능)
 - 식인성질병의 조사 및 위험요인 모니터링
 - 기술이전 및 원조 : 워크샵, 세미나, Training manual 개발
 - WHO South-East Regional Office(SEARO)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a Strategic Plan for Food Safety에서 권고한 10개항 소개
 - Food safety policy
 - Food legislation
 - Food control and inspection
 - Analytical capability
 - Epidemiological systems
 - Establishing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s with the food industry and trade
 - Establishing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s with food service providers and retailers
 - Establishing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s with consumers
 - Education and training in food safety

- Research in food safety
- HACCP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Joint FAO/WHO Consultation on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in Assessing HACCP 보고서, Joint FAO/IAEA/WHO Study Group on High Dose Irradiation 보고서가 있음.

□ 평 가

- JECFA, JMPR 등에서 논의한 결과는 이미 보건복지부 소속 CODEX 사무국에서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Mycotoxin 회의나 FAO가 WHO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미생물학적 위해 평가 등에 대한 회의나 관련자료는 Follow-up이 어려운 상태임.
- 관련 정책수립에 WHO 지역사무소(SEARO)에서 배포한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a Strategic Plan for Food Safety의 10개 권고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AO, WHO 관련 Workshop, Seminar 유치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회의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취득 및 세계무대에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회원국 보고(Reports by Member Countries)
 - CX/ASIA 99/7, CX/ASIA 99/8 oral reports -

□ 논의내용

- 본 회의 참가국(소비자단체 포함)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련 활동 및 법령을 소개하였음.
-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태국.

호주, EC(European Community), ILSI가 발표하였음(각국의 내용은 일본자료 참고).

한국(CRD 14 참조)

- 한국은 식품중 농약, 수의약품, 중금속 및 질산염의 함유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오염기준을 결정한 바 있음.
- 수의약품 :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일부 수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농 약 : 농약의 섭취량은 ADI (Acceptable Daily Intake)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중금속 : 수은등 4종의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천연에서 존재하는 정도로 검출되어 오염수준은 낮았음.
- 질산염 : 채소류를 대상으로 함유정도를 조사한 결과 썩갓, 시금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중 국

- National CODEX Committee가 재조직되었음.
- CODEX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규격을 재검토중임.
- HACCP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000개 이상의 회사가 설비를 갖추었고 342개 회사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상태임.

일 본

- 총식이조사결과 Dioxin의 섭취량은 2.0pgTEQ/kg body weight로 기준치(4.0pgTEQ/kg body wt)보다 적은 수준이었으며 지난 20년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HACCP는 1995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훈련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음.
- GM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성조사회(Food Safety Investigation Council)에서

논의중에 있음.

- GMO식품의 표시는 2000. 4월 시행예정
- 의제 논의 후 분과위원회 동의사항
 - 모든 아시아 회원국은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식품 chain 전반에 걸쳐 CODEX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회원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향상시키고 이를 국제적인 규격, 실행규범과 조화시켜야 하며 교역당사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인정(Recognize)하여야 함.
 - CODEX는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 평 가

- 중국의 경우 National CODEX Committee를 통해 최근 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HACCP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국의 Food chain 전반에 걸쳐 CODEX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제적인 규격, 실행규범과 조화시켜야 함을 명시한 것은 향후 CODEX에서의 결정사항이 국가간 교역시 기준이 됨을 의미함. 이미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식품관련 기준은 CODEX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향후 대응방안

- 위의 평가에 따라 CODEX 회원국은 CODEX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의 관련 규격, 실행규범 등을 재검토할 필

요가 있음. 그러나 CODEX가 국가 간 협의체이나 일부 강대국의 영향력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무조건적인 수용·조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우리나라 관련 규격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발언요지(CRD 14 참조)

- 우리나라는 본 의제와 관련하여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질산염에 대해 국내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음.

의제 8. 지역내에서의 위해분석 업무 수행(Implementation of Risk Analysis in the Region)
- CX/ASIA 99/9 -

□ 논의내용

- 11차 회의에서 위해분석관련 정보와 경험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23차 총회(1999. 6)에서 위해분석과 관련하여 각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3개의 권고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이 자국내의 활동을 보고하였음.
 - 일본
 - Dietary Intake Survey Method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질문서를 통해 아시아회원국의 식품안전관련 모니터링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상태임.
 - 일본은 National Nutrition Survey data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섭취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CODEX의 식품분류를 토대로 97.5 percentil에 해당하는 일일섭취량 자료를 CCPR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에 제출하였음.

이 과정 중 기술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일본과 CODEX의 식품분류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분류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고 상호 정보교환이 필요함을 지적함.

- 말레이시아
 - National Committee on Risk Analysis 설치
 - 5개의 National Subcommittee 설치(Biological assessment, Food additives, Contaminants, Veterinary drug residues and pesticide residues, Risk communication)
 - ILSI, FAO 원조하에 Risk assessment and harmonization 관련 세미나 개최
-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 일본이 계속 Dietary intake data를 수집
 - 위해분석원칙의 이행을 위해 다음 권고사항을 채택
 - 아시아 각국은 위해분석원칙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식품안전프로그램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FAO, WHO는 기술적으로 원조하여야 함.
 - FAO, WHO는 위해평가를 포함한 위해분석원칙이 실질적이행에 대한 지침 제공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아시아회원국은 식품 중 오염물질의 식이노출량평가등 위해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CODEX 분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CODEX, FAO, WHO는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실질적인 미생물학적 위해분석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 회원국은 CODEX 규격과의 조화 및 지역내에서의 위해분석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회원국은 CODEX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National CODEX Committee가 소비자 및 개인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 및 절차를 채택하여야 함. 위해전달은 소비자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함.

- 위해분석은 과학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 위해분석은 단계적인 방법(Phased manner)으로 이행하여야 함.

○ Priority issue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isk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hazards in foods

- 화학적 위해평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미생물학적 위해평가를 위해 회원국에게 질문서를 배포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기로 함(태국주관).

○ Food data base for dietary exposure assessment

- 일본, 한국, WHO가 관련자료를 보고하였음(우리나라는 의제 7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하였음).
- 의제 논의 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 회원국은 포괄적인 식이노출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회원국은 식품섭취량 관련 Database 개발에 협력하여야 함.
 - 아시아 각국간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FAO, WHO 및 선진국의 원조가 요구됨.

○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

- 아시아 각국은 식품섭취 및 환경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며 위험에 대한 노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해분석과정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회원국이 상호협조하여야 함. 이를 통해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회원국은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CODEX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평 가

○ Food data base for dietary exposure assessment

- 일본이 작성·배포한 Dietary Intake Survey 관련 질문서는 일본이 각국 Contact Point에 배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ODEX Contact Point인 농림부에서 관련 문서가 송부되지 않아 여러 관련국중 우리나라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임.

- 현재 CODEX Contact Point는 CODEX와 관련한 각종 문서를 자국의 관련부처에 송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Contact Point를 통한 문서의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Codex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Priority issue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isk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hazards in foods

- 말레이시아는 CODEX 각 분과를 설치하여 위해분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됨.
- 태국의 경우 미생물학적인 위해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CCFH(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에서 논의중인 관련의제에 의견개진 예정임. 태국의 경우는 실질적인 위해평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CODEX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음.

○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은 국가규격 설정시 과학적인 근거이외에 사

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료축적이 미흡한 우리로서는 이 개념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응 방안

- Codex Contact Point를 통한 활발한 문서배포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
 - 우리나라의 경우 Other legitimate factors and 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외국의 의견과 국내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의제 9. 상호인정 문제(Matters Regarding Mutual Recognition)
- CX/ASIA 99/10 -

□ 논의내용

- 상호인정은 하부조직(infrastructure)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원조 및 수출·입국간 기술원조가 필요함.
- 또한 국제인정조직원 간 작업의 중복을 피하여야 함.
- 논의 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 CODEX는 회원국간 상호인정의 다자간 협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
 - 회원국은 CCFICS(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에서 설정하는 동등성판정지침 등의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회원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상호인정 체결시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quivalence Agreements Regarding Food Imports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을 이행하여야 함.

- CCASIA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원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UN의 원조를 구하도록 CODEX, FAO, WHO에 요구하여야 함.

□ 평가

- 상호인정 체결시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quivalence Agreements Regarding Food Imports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을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이 지침서가 상호인정 체결시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함.

의제 10.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 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Consumer Participation in Food Standards Setting at the CODEX and National Level)
- CX/ASIA 99/11 -

□ 논의내용

- 23차 총회에서 각 지역조정위원회로 하여금 forum을 개최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한 바 있음.
- 부탄, 인도, 일본 및 WHO의 상황보고가 있었음.
- 논의 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 CODEX 작업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함.
 - 아시아 각국은 식품안전규격설정 및 위해전달이행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단체의 참여에 협조하여야 함.
 - 회원국은 국가차원의 활동에서 소비자단체대표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평 가

- CODEX 활동에 소비자단체를 포함 시킴으로써 CODEX 관련 모든 작업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일본소비자단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CODEX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개진을 통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의제 11. 지역조정관이 지명(Nomination of the Coordinator) - CX/ASIA 99/12 -

□ 논의내용

- 말레이시아가 차기 지역조정관을 맡기로 함(부탄, 미얀마, 한국지지).

□ 평 가

- 지역조정관은 담당 지역을 총괄하여 회의를 개최·주재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홍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지역조정관에 관심이 있는 상황임. 실제로 캄보디아가 중국을 추천한 바 있으나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조정관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외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함.
- 지역조정관의 국가간 사전 조율은 Contact Point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Contact Point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향후 대응방안

- 우리나라에서 지역조정관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사전협의 및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의제 12.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Other Business and Future Work)

□ 논의내용

- Composition of Executive Committee
 - 중국은 지역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집행이사회의 임원수나 참관인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23차 회의시 집행이사회의 임원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동조한 것임.
 - 말레이시아는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관인의 수를 늘리며 참관인을 선출하는 기준도 설정하여야 함을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참관인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찬성의 의사를 표명함(실제로 CCASIA를 담당하는 Dr. Yamada Yukiko는 개인적인 의견교환시 집행이사회의 임원수가 늘어남으로써 집행이사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럽지역조정위원회는 회원국이 40개국으로 21개국의 아시아지역보다 많음에도 집행이사회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참관인이 아닌 임원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언급하였음).
 - 인도는 집행이사회의 임원수가 많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임원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필리핀은 지역대표와 지역조정관간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함.
 - 논의 결과
 - 회원국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미 23차 총회에서 CCGP(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관심있는

국가는 CCGP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 Need for Improved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EX

- 일본은 병포장음용수의 규격에 광천수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역내에서 CODEX 작업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의견 및 지역대표 관련사항 등의 자료교환을 포함한 조치(Measure)를 제안함.
- 지역대표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국 법령의 Database화 필요성에 따라 WTO에서 국가 및 지역법령을 기초로 하여 작업이 이미 진행중임.
- 논의 후 분과위원회의 동의사항
 - 지역조정관과의 구분을 위해 지역대표의 책임을 논의할 것을 CCGP에 요청함.
 - 각 회원국은 아시아지역 지역대표와 지역조정관이 집행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회원국은 공람문서 및 작업문서에 대해 서면의견을 제출하여 아시아의 상황과 의견을 CODEX에 알려야 함.
 - 회원국은 정보, 의견, Data 및 관련정보의 교환이나 회원국간 연락확대를 위한 방법이나 체계를 모색하여야 함.
 - 회원국은 CODEX 권고사항 설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FAO, WHO는 개발도상국의 관련기관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CODEX 규격설정에 활용함으로써 CODEX 규격을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FAO, WHO는 JECFA, JMPR 및 기타 전문가협의회에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및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Need for Consensus in Elabo-

r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 말레이시아는 CODEX 규정집의 개정을 제안했는데 투표가 필요한 경우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회의 전 수렴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회의시 토론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토론시에는 이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3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찬성의 의사를 표명한 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의 서면의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함.
- 논의 결과
 - 이 문제와 관련하여 CCGP에 의제가 있으므로 말레이시아가 CCGP에 의견을 내기로 결정함.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 말레이시아는 CODEX 규격, 기타 권고사항의 설정시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CODEX 권고사항이 개발도상국이 수출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는 많은 지지를 얻음.
- 그러나 CODEX 규격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CODEX의 목적 중 하나가 교역촉진이므로 말레이시아의 두번째 제안을 불필요한 것으로 설명됨.
- 개정중에 있는 Code of Ethics for International Trade에는 개발도상국의 차등대우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개진이 바람직함.

□ 평 가

○ Composition of Executive Committee

- 집행이사회 의 임원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함. 즉,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은 회원국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수를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 집행이사회

의 임원수 증가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아시아지역내에서의 우리의 위치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즉, 아시아국가 중 CODEX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우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뿐 아니라 최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수나 참관인을 늘린다고 우리가 그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참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Need for Improved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EX
 - CCGP의 논의를 거쳐 다소 모호했던 지역대표와 지역조정관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혼동을 없앨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선진국 위주였던 JECFA등 전문가 회의에 개발도상국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고려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대응방안

- Composition of Executive Committee
 - 임원수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참관인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관련국과의 조율이 필요함.
 - 집행이사회의 임원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향후

관련 부처간의 사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Need for Improved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EX
 - JECFA나 JMPR 등은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회의로 이런 전문가 회의에 우리나라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 Need for Consensus in Elabor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 투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 수렴을 통해 CCGP에 의견개진 필요

의제 13.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Date and Place of Next Session)

□ 논의내용

- 차기회의는 2002년 초반기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함.
- 차기회의와 작업문서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는 아랍어로 진행될 것임.

□ 평가

- 차기 지역조정관으로 말레이시아가 지명되어 회의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임. 즉, 지역조정관으로 선출되면 지역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게 됨.
- 참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아시아 지역조정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